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 I.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개요
- II. 2025년도 공모계획
- III. 공모 평가계획 및 접수방법
- IV. 공모 참고자료

교 육 부

문화체육관광부

보 건 복 지 부

해 양 수 산 부

행 정 안 전 부

농림축산식품부

국 토 교 통 부

중소벤처기업부

I

'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개요

- (추진배경)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편리한 생활시설 마련 필요
 - 공모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지방이주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여 수도권-지방 간 경제·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 달성 촉진
 - *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23.10.30. 확정) 內 ‘중점 추진과제’ 6. 생활 인구 늘리기에 ‘지역활력타운’ 과제 포함
- (지역활력타운 개념)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거점 조성
 - 인구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이주자수요 맞춤형 주거 및 수도권 수준의 생활시설·생활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에 적합한 연계사업 선택·추진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25년은 8개 부처 통합공모를 통해 22개 연계사업 추진

< 지역 활력타운 개념도 >



- (주요 사업내용)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의 사업추진 장려, 다부처 통합지원과 민관협력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
 - (주거) 입주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타운하우스, 단독·공동주택 등을 분양 및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 가능
 - (생활인프라·서비스) 각 부처 연계사업 중 지역활력타운에 필요한 시설·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자율 선택
 -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재정여력 등에 따라 연계사업을 선택하고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활력타운과 각 연계사업 동시 선정(일부는 가점 부여 등)
 - * 각 개별사업별 법령 및 예산지원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준수하고, 연계사업별 선정규정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절차 이행 (연계지원사업 리스트, 참고3)
 - (운영방식 다각화) 양질의 주거공급 등을 위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민간이 업무·책임을 분담하는 다양한 사업자 구성 가능
 - * 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부지 조성 및 주택건설·운영, 지원 서비스 등의 운영 가능
 - (자율적 공급) 지역특성에 따라 입주대상, 단지 조성방식, 주택유형 및 공급 규모, 생활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

< 사업유형 예시 >

※ 하단은 사업 유형은 예시일 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 유형 도입을 권장

- (은퇴자 마을) 지방에서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어우러진 복합타운 조성
 -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과 함께 입주민·지역주민이 융합할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서비스(체육·돌봄 등) 공동이용
- (학교살리기) 지역 내 초등학교로 전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주거 공급, 도서관·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 지원
 - 특화·맞춤형 교육 등 학생유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연계
- (청년창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공간, 문화·여가시설 및 주거 등 공급
- (일자리연계) 해당지역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취업하고자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인근에 주거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공급

1. 대상 및 선정방식 등

- (공모대상)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초지자체는 제외
- (선정방식)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한 공모 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신청사업 중 최종 **10건 선정**(‘23년 7건, ‘24년 10건 선정)

〈 '24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 ▶ (연계사업 확대) 18개 사업 → **22개 사업**(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 사업 추가*)
- * (행안부)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사업, (농식품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회서비스 취약지지원 사업

2. 지원사항

- (재정지원) 지자체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규모**를 제안하고, 각부처의 검토를 거쳐 **확정**
 - * 사업선정 이후 개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지원사업 금액·범위 등 조정 가능
- **통합공모 선정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각 부처 **연계사업**이 동시에 선정된 것으로 인정하거나 개별사업 공모시 가점부여 등 고려
 - * 공모 신청 전 각 부처 연계사업별 사전컨설팅 이행
- 개별사업별 법령에 따른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 **후속절차** 이행 및 예산의 조정 가능
- 선정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시·도지사) 이후 **연계사업별 예산지원**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실현가능성 검증 필수
- (인·허가 특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변경), 관광단지·물류단지 지정 등 의제처리
-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다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사업컨설팅** 등 지원

지역활력타운 주거유형 및 연계지원 가능사업 메뉴판

주거

□ 타운하우스·단독/공동주택 등

- 부지조성·건설 후 실수요자 대상 분양/임대
- 공공·민간(건설사, 리츠, SPC 등) 통해 분양/임대 등

국비 지원 가능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산정(예:50억원)
- (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 (지원내용) 기반시설 조성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사업지원*

- * 통합공모 선정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평가 시 가점 부여, 광역지원계정 별도 지원 권장

□ 지역활력기반지원(국토교통부)

- (지원) 국비 20억원(국비5:지방비5 매칭)
- (대상) 지역활력타운 조성 희망 기초지자체
- (지원내용) 교통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역주민 편의 증진사업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사업지원

동시 선정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지원) 30억원(생활밀착형, 시·군·구 단위, 유아체육형)
- * 1차년도 2억(설계비), 총 4년간 국비 교부
- (대상) 지자체(광역 및 기초) 자본보조
- * 보조사업자는 광역지자체임
- (지원내용) 시설 건립비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사업지원

국비 지원 가능 사업

□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교육부)

- (지원) 총사업비의 20% ~ 50%
- (대상) 지자체교육청 공동신청, 지역현안 개별사업
- (지원내용) 교육·돌봄, 체육·문화 용도 학교 복합시설 건립비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우선 선정

우선 선정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보건복지부)

- (지원) 타운 내 독거노인 등 거주자수를 반영하여 시·군·구 연간 대상자 수 배정
- (대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 (지원내용) ICT장비 설치정비 및 안부확인 등 대상자 관리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우선 배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 (지원) 타운 내 독거노인 등 거주자수를 반영하여 시·군·구 연간 대상자 수 배정
- (대상) 독거노인 등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우선 배정

□ 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

- (지원) 타운 내 65세 이상 거주자 수를 반영하여 연간 시·군·구 일자리 수 배정(국비5:지방비5)
- (대상)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노인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우선 배정

국비
지원
가능
사업

□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 (지원) 타운 내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비 우선 지원
 - * (국고보조율)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 (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통합 제공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예산 우선 지원

우선
선정

□ **농촌아이돌봄지원(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개소당 시설비 152백만원, 운영비 13.7백만원(국비5:지방비5 매칭)
- (대상) 농촌 읍면도서지역 영유아 현원 3~10인 이하인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지원내용) 시설비, 운영비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우선 선정

□ **어촌신활력증진(해양수산부)**

- (지원) ^{유형1} 개소당 최대 300억원(국비 50%) ^{유형2} 개소당 최대 100억원(국비 70%)
- (대상) 법정어항, 소규모항포구 및 배후지역 등
- (지원내용) 경제 거점시설, 생활서비스 거점 시설 조성 및 창업지원 등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우선 선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최대 50백만원
- (대상) 주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3개 프로그램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 시, 최소요건 평가후 우선 선정

국비
지원
가능
사업

□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행정안전부)**

- (지원) 개소당 6억원(국비5:지방비5 매칭)
 -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로컬브랜딩 희망 시·군·구
- (지원내용) 생활권 단위로 지역특성과 종합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기반 구축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

가점
부여

□ **사회서비스 취약지지원 사업(보건복지부)**

- (지원) 타운 거주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국비 지원
 - * (국고보조율) 성장촉진지역 80%, 기타 70%
-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한 거점제공기관
- (지원내용) 기관운영비, 출장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예산 우선 지원

□ **농촌돌봄농장(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55백만원
- (대상) 사회적 농업 실천 중인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지원내용)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 비용, 기획비, 홍보비, 시설비 등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우선 선정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해양수산부)**

- (지원) 어촌정착금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 (대상) 만40세 미만, 수산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
- (지원내용) 귀어인 및 수산업 창업예정자 대상 수산업 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우선 선정

□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사업(행정안전부)**

- (지원) 청년마을별 2억씩 3년간 총6억(국비)
 - * (운영주체) 청년기업 선정 및 사업운영비 지원, 지자체·운영주체 평가 후 차등 및 계속 지원 결정
- (대상) 청년기업(청년 대표, 운영진 50% 이상 청년)
 - * 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 (지원내용) 신규 청년마을 조성 및 활성화 등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
 - * 청년마을 활동공간으로 지역활력타운 사용 협약서 시

**국비
지원
가능
사업**

**가점
부여**

□ **우리동네살리기(국토교통부)**
 · (지원) 50억원(총사업비 40~60% 매칭)
 · (대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면적 5만㎡ 내외
 · (지원내용) 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지 정비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개소당 200억원(국비7:지방비3 매칭)
 ·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희망 지자체
 · (지원내용)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최대 40백만원
 · (대상) 예비창업자(소상공인)
 · (지원내용) 창업상담·지도·교육, 사업화자금 패키지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최대 40백만원
 · (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총족 소상공인
 ·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자금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

□ **로컬브랜드 창출(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최대 2.5억원
 · (대상) 로컬크리에이터가 대표기업인 3개사 이상 팀
 · (지원내용) 골목상권 브랜드화를 위한 상권 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소요자금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최대 1억원
 · (대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 고도화 자금 지원
 · (지원방식) 통합공모 선정시 가점 부여

**시도
사업
(예시)**

□ **작은도서관**
 · (지원) 시·도 자체사업
 · (대상) 면적 33㎡이상, 자료 1,000권 이상
 · (지원내용) 별도지원 없음(전환사업)

□ **작은영화관**
 · (지원) 시·도 자체사업
 · (대상) 농촌지역 지자체
 · (지원내용) 별도지원 없음(전환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 (지원) 시·도 자체사업
 · (대상) 전체 지자체
 · (지원내용) 별도지원 없음(전환사업)

□ **여성농업인센터**
 · (지원) 시·도 자체사업
 · (대상) 농촌지역 지자체
 · (지원내용)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시군
자체
사업
(예시)**

□ 천원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 학교살리기 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다함께 돌봄서비스 지원, 청년활동가 아카데미

□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청년농촌보급자리 주택단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청춘 창업 드림 지원사업

3. 신청요건

□ (신청주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초지자체는 제외

□ (신청규모) 사업면적, 사업비 규모 등은 지자체 자율적 계획 수립가능

* 사업기간, 시행여건, 입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신청 하되, 지자체가 기존에 기획 또는 추진 중인 부진사업의 신청은 지양

4. 사업계획 작성 (30P 이내)

□ (계획수립) 특색 있고 우수한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지역 내 입주 수요 및 주요시설, 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 지역자산 : 자연경관, 특화산업(일자리연계), 철도역세권, 역사문화 등

○ (주거) 지역 특성과 수요(신규유입+지역주민)를 고려한 적정 규모, 층수, 면적(평형), 유형(임대, 필지·건축물 분양), 입주대상 등을 계획

* 임대주택 위주의 주거계획(국토부 생활거점사업) 지양하고 수요계층별 다양한 주택유형 반영

○ (생활인프라)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 기존 생활 SOC 현황, 연계사업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유형, 규모 등 수립

○ (생활서비스) 인근 산단·기업, 부처·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 생활인프라를 활용한 돌봄·안전·요양서비스, 문화·체육서비스 등 제공방안 검토

- 연계사업을 통해 설치된 생활인프라에 대한 운영계획도 포함 필요

□ (제안서 주요 내용) 사업추진 필수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1. (사업명칭·필요성·목적) 지역의 여건·특성에 맞춰 사업추진동기 및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 등을 적시

2. (위치·면적) 연계사업의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입지이어야 하며, 특성에 따라 신규개발 및 기존도시의 개발도 가능

3. (세부사업내용) 사업시행자 구성(공공·민간·민관합동, 조합 등) 및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연계추진사업 등

*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MOU 체결문서 등 참여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단순 협의 문서 지양)

< 사업시행자 구성 예시 >

<사업자 구성>

·(지자체 단독 시행) 전체사업을 지자체에서 책임 추진하되 필요시 공정·시설별로 공공기관·민간위탁

·(민관 협업) 지자체·공공기관(LH, 지방공사 등)이 토지 확보 후 민간분양·지자체 매각 등을 통해 민간(건설사, 리츠, SPC 등)·지방공사 등이 주택 건설·공급

<기능별 역할분담>

·(부지조성) 지자체·공공기관(LH, 지방공사 등) 조성 후 민간·지방공사 등 매각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지자체 건설 후 직접 운영, 민간·지방공사 등 운영위탁 가능

·(주택건설) 주택공급 조건으로 민간·지방공사 등 부지매각

- ① (추진계획) 공모 선정 이후 협약체결, 개발계획수립, 지구지정, 실시계획 및 착공 등 사업일정과 기타 필수 인허가 추진계획 제시
- ② (입지기준) 의료·복지, 문화·여가·체육, 일자리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기존 도심과 연계된 지역 및 수도권, 인근 광역도시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철도 역세권, 고속도로 IC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 * 항공사진 등에 사업대상지와 연계된 생활인프라 내용을 제시
- ③ (교통) 입지에 적합한 대중교통, 주차장 등 교통지원계획
- ④ (토지이용) 지원서비스 시설, 기반시설(공원·도로 등), 주택조성 계획
 - (단지개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유상공급면적 비율은 70% 이상 권장하며, 조성된 토지·시설의 처분계획 제시
 - (주택계획) 타운하우스, 단독·공동주택 등 입주자 유형을 감안해 주택 및 부지* 혼합공급
 - * 개별건축시 장기간 미개발 방지를 위해 분양 후 2년 이내 착공 등 방안 강구
 -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활용해 지역에 적합한 돌봄·의료·요양서비스, 일자리, 창업지원, 의료여가 등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설의 규모·배치 제안
- ⑤ (연계 추진 사업) 해당 사업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연계사업의 주요내용 및 반영 필요성, 연계방안 제시
 - 각 연계사업을 구체적 반영하되, 선정 이후 임의로 연계사업 미추진 시는 향후 응모제한 등 패널티 고려(‘24년 연계 부처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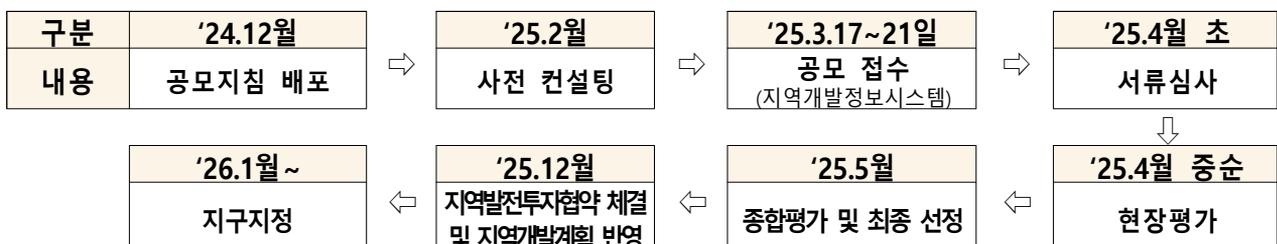
4. (사업내용 구성 및 연계성) 해당지역에서 패키지 사업(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이 필요한 이유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 부처 연계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 주거거점 조성 계획 등
 - 시설별 조성비용 등 총사업비, 자원(재정, 차입, 분양금 등) 조달 방안, 사업성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5. (수요 확보) 사업계획에 적합한 입주대상자(이주자, 지역주민 등)를 검토하고, 수요확보*를 위한 계획 마련
 - * (예시) 수도권·대도시 중산층 은퇴자, 신혼부부, 40세 미만의 청년층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요시 수요조사서 첨부
6. (사업추진 가능성) 대상지의 공적규제 현황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 부지 확보 방안* * 권리분석 및 필요시 수용·사용계획(수용시 세부 목록 작성)
 - 사업대상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사업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지이용 규제지역 포함여부*, 허가권자 현황, 사전협의 내용 등 관련 자료** 제출
 - * 토지이용규제지역(「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문화유산법」, 「군사기지법」 등), 환경규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등
 - ** (제출 서류) 사업부지 토지 현황,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단지조성시 우려되는 환경오염 조치계획,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요인 검토 및 대처방안 마련, 지역사회와 상생방안 등
7. (사업 지속성 및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의 증가, 인근 주민을 포함한 정주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 등 파급효과, 사후 운영관리 계획
 - 단지 준공 이후 10년 이상 시설별 운영주체* 및 운영비용 조달계획
 - * 지자체 직영, 공공기관·민간 위탁 가능(운영비용을 추계한 지자체장 방침 첨부)
8. (지자체 홍보계획)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환기, 수요자 확보를 위한 홍보 메시지, 방법 및 시기 등

5. 사업관리

- (사업선정 후 절차) ① 연계사업별 추가절차 이행('25.6월~11월) → ②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지역개발계획 반영('25.12월) → ③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착공('26.1월부터)
 - *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등의 절차는 지역개발지원법 적용(실현가능성 검증 등)
- 공모선정 후 「지역개발지원법」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필요
- 다만, 난개발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은 예외적으로 지역개발계획 반영 없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가능
 -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만m² 미만(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
- (총괄사업관리자)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필요시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업무의 위탁 가능
- (사업 취소 등)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추진 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와 달리 공모 선정 이후 사업구역 조정, 연계사업 제외·변경 등 임의적으로 사업이 수정되는 경우*
 - * 사업 선정 이후 연계지원사업별 법령 및 예산지원 요건 미충족 등으로 연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개별 연계사업 취소도 가능
 - 토지이용규제,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6. 주요 추진일정

- (공모 접수) '25.3.17(월)~3.21(금) → (선정) '25.5월



1.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평가계획)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를 거쳐 최종사업 선정(25.5월)
 - (서면심사) 신청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통해 현장점검 대상지 선정
 - * 지자체별로 제출된 서면 신청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일정점수 이하 탈락)
 - (현장평가)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여건 및 입지를 점검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종합평가) 현장평가 결과 등을 보완하여 최종 발표평가 실시
- (선정기준) 지역활력타운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타당성(40점), 추진가능성(35점),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25점)로 구분, 평가
- (선정방법) 종합점수는 현장평가(40%), 종합평가(60%)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최종 10건 선정

2. 접수 방법

- (접수기한) 2025. 3. 17(월) 9시 ~ 3. 21(금) 18시
- (제출자료) 공모신청서 등 관련 자료
- (제출방법) 기초지자체에서 시스템 입력하고 광역지자체 통합 제출(공문 포함)
 -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공모사업 접수현황 확인을 위해 온나라 전자문서(공문)도 함께 제출
 - * 공문 제출 시 시스템상 제출완료 확인을 위한 캡처 파일 첨부

지역활력타운 공모 참고 자료

- 참고1 2025년 지역활력타운 세부일정
- 참고2 2025년 지역활력타운 평가기준
- 참고3 부처별 연계사업 담당자 및 사업별 세부내용
- 참고4 지역활력타운 계획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할
- 참고5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제출서류 양식

참고 1

2025년 지역활력타운 세부일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공모지침 배포	'2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지침 배포 지자체 설명회 개최 	부처통합
↓			
사전컨설팅	'25.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컨설팅 	지자체
↓			
공모사업 접수	'25.3월 17~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계획서 접수 * 지역개발정보시스템으로 접수 	지자체
↓			
평가위원회 구성	'25.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회 구성 	부처통합
↓			
사업 평가	서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면 심사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25.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심사 선정사업 대상으로 현장점검(지자체 등 인터뷰)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평가 및 위원 간 토론 등을 통해 최종사업 선정 	
↓			
결과통보 및 홍보	'25.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및 홍보 	부처통합
↓			
협약 체결	'2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부처통합 지자체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2025년 지역활력타운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주요 내용	배점
사업 내용 타당성	사업내용의 구성 및 연계성	- 지역활력타운(주거-생활인프라-생활 서비스)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 규모 ·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의 발전가능성 - 지역활력타운 관련 사업 간 연계추진 시너지 효과	10
	입지 적정성	- 인근지역의 주요시설, 생활서비스 접근 정도 -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등 사업간 입지 연계성 - 지역 특화자원 활용여부 및 주변 여건을 감안한 계획 수립	20
사업 추진 가능성	사업추진계획의 현실성	- 부지 확보 및 계획수립 - 토지이용규제 저촉 여부 및 각종 영향평가 절차 이행 여부	10
	이용자 수요 확보 가능성	- 입주수요 조사 및 구체적 입주계획 - 주민 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 - 유입인구에 대한 일자리·여가, 생활 서비스 연계방안	10
	주민융화 및 갈등관리	-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전문가 등 참여 및 의견수렴 여부 - 기존주민과 이주민 간 조화방안	10
	자체사업 연계	- 광역·기초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연계 효과 및 지역활력타운 기여도	5
사업 지속성 및 기대 효과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주민 생활여건 개선가능성 - 인구유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10
	사업 유지·관리 계획 적절성	- 사업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관리주체 및 조직, 관리비용, 예상확보 및 운영방안, 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 등)	15
총계			100
사업 연계	가점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과 연계 시(붙임 참고)	최대 +2
입지 및 주거	가점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따른 수혜 인구가 많은 지역 우대(붙임 참고)	최대 +1
성장촉진 지역 배려	가점	성장촉진지역 해당 여부	+1

※ 가점은 종합평가에만 적용(서면심사·현장평가에는 가점 적용 X)

1] 사업 연계(증빙자료 제출 必)

○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부처 주요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사업 1개당 가점 0.5점씩, 최대 2점 가점

* 기획발전특구(지방시대위), 학교복합시설 건립지원(교육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농식품부), 어촌신활력증진(해수부), 상권활성화(중기부), 청년마을(행안부)

** 지역활력타운 반경 1km 이내에 해당 사업 지역이 있는 경우 연계성 인정

- ①주요 사업에 이미 선정(지정)되었거나, ②이번 지역활력타운 공모 신청 시 메뉴판 연계사업으로 주요 사업(학교복합시설·스마트팜·어촌 신활력증진)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

○ 사업 선정/지정(공문 등) 및 지역활력타운 연계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2] 입지 및 주거(증빙자료 제출 必)

○ 지역활력타운 구성에 따른 수혜 인구(인근 주민 수, 신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우대, 평가점수에 따라 최대 1점 가점

<주거 및 입지 평가점수 산정방식>

$$\text{평가점수} = \left(0.6 \times \frac{\text{반경 1km 내 주민 수}}{\text{반경 1km 내 주민 수 최대값}} \right) + \left(0.4 \times \frac{\text{신규 주택 수}}{\text{신규 주택 수 최대값}} \right)$$

* 반경 1km 내 주민 수 및 신규 주택 수 최대값은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신청한 전체 지자체 중 주민 수 및 주택 수가 가장 큰 지자체의 값을 의미

<평가점수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평가점수	가점
평가점수 < 0.4	0점
0.4 ≤ 평가점수 < 0.7	+0.5점
평가점수 ≥ 0.7	+1점

○ 지역활력타운 반경 1km 내 주민 수, 신규 주택 수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종합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 제출자료 검증 및 평가점수 산정

3] 성장촉진지역 배려(별도 증빙자료 필요X)

○ 낙후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촉진지역에 해당 하는 지역이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부여

참고 3

부처별 연계사업 담당자 및 사업별 세부내용

1. 연계지원 사업 리스트 및 담당자

연계 유형	연계사업	국비보조	지원부처	담당자	연락처	
동시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 내외	행안부	강경국 事 김창균 事	044-205-3522 044-205-3509	
	지역활력기반지원	20억원	국토부	김다은 事	044-201-3669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30억원(생활밀착형, 시니어·유아친화형)	문체부	이문옥 事 송선미 主	044-203-3138 044-203-3139	
우선 선정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	건립비의 20% ~ 50%	교육부	변정을 事 황상민 主	044-203-6318 044-203-6319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 수 배정	보건복지부	윤철중 事 김보경 主	044-202-3459 044-202-3454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수 배정	보건복지부	최해진 事 이도이 主	044-202-3460 044-202-3461	
	노인일자리 사업	일자리 수 배정	보건복지부	김민주 事 김은지 主	044-202-3477 044-202-3475	
	일상돌봄 서비스	시·군·구 당 약 1~1.5억원 수준	보건복지부	이지현 事 우재현 主	044-202-3224 044-202-3226	
	사회서비스 취약지지원	시·군·구 당 약 27백만원 수준	보건복지부	이병희 事 김혜수 主	044-202-3222 044-202-3223	
	농촌아이돌봄지원	시설비 152백만원 운영비 13.7백만원	농식품부	남경원 事 박영현 主	044-201-1566 044-201-1567	
	농촌돌봄농장	55백만원	농식품부	김화태 事 김시은 主	044-201-1572 044-201-1573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50억원(유형1) 70억원(유형2)	해수부	조승래 事 민현태 主	044-200-6174 044-200-6178	
	청년어업인정착지원	인당 최대 월 110만원	해수부	김건효 事 김상동 主	044-200-5662 044-200-5663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최대 50백만원	중기부	유기석 事 문창석 主	044-204-7472 044-204-7588	
	가점 부여	로컬브랜딩활성화	3억원	행안부	김원한 事 조은영 主	044-205-3912 044-205-3914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6억원	행안부	김혜정 事 권기현 主	044-205-3407 044-205-3427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	국토부	민채현 事 신현진 主	044-201-3741 044-201-3731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200억원	농식품부	이강권 事 정민웅 主	044-201-2423 044-201-242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최대 40백만원	중기부	김대욱 事 박찬영 主	044-204-7285 044-204-7830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최대 40백만원	중기부	이청수 事 강태수 主	044-204-7854 044-204-7283	
로컬브랜드 창출		최대 2.5억원	중기부	이청수 事 강태수 主	044-204-7854 044-204-7283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최대 1억원	중기부	이청수 事 강태수 主	044-204-7854 044-204-7283	

2. 연계지원 사업별 세부내용

1.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안부)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규모로 10년간 지원('22년~'31년)
 -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규모로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 (배분계획)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기초계정)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 배분
 - * 조합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수행(서면검토→대면평가→종합평가)
 -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관심지역 18개 (5%, 375억)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	▶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	▶ 대규모 펀드사업 추진 지원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사업 지원(기금 배분 인센티브 부여)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 시 지역활력타운 선정지역 가점 부여,
광역계정 우선 지원 권장

지역	사업 내용
인구감소지역(8개)	
<p>고흥군</p>	<p><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스마트농수축산밸리 조성하여 청년 창업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내용)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스마트축산CT 단지 조성, 스마트수산양식단지 조성, 청년창업컨설팅 지원
<p>남원시</p>	<p><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지리산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천연물 기반 첨단소재 발굴, 기업 맞춤형 소재개발·실증 등을 통한 바이오소재 혁신 공급기반을 조성 ▶(내용) 남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구축·운영,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p>단양군</p>	<p>< 단양 미래클파크 조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관광 체류인구 유치 확대로 지역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과 연계, 단양역-시루섬 경관 조성하고 단양강 등 자원특성을 활용한 관광스타트업 홍보 및 지질투어 프로그램 운영
<p>보령시</p>	<p><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탈석탄화 기조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육성 지원 ▶(내용) 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계하여 LNG냉열 특화산업단지 조성, 수소 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수소기업 R&D허브 구축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p>신안군</p>	<p>< Book-아일랜드 팔금 커뮤니티 조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팔금도의 자연·문화유산을 결합하여 Book-아일랜드를 조성하고 인문학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 구현 ▶(내용) 거점 커뮤니티 센터, 셰프 빌리지(천일염 테마), 창작스튜디오, 북스테이하우스 등 체류인구 지원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지원 시설 조성

청도군	<p><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지역활력타운과 대중교통(행복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 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층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티를 완성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50호), 연령별 특성에 맞는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빈집재생을 통한 숙박·문화공간 조성, 청년창업 지원 등
하동군	<p>< 매력도시 하동 건강 인프라 구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공공의료 거점 조성하여 인구유출 원인 해소 및 '매력있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 구축 ▶(내용) '별천지 하동 행복 의료원' 조성하여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공간을 구축하고 건강행복학교를 통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
횡성군	<p><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 조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이(e)모빌리티* 관련 기관 및 기업 직접화를 바탕으로 청년인구 일자리 창출 및 핵심인재 유입 도모 <li style="padding-left: 20px;">*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생활교통과 물류배송 목적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이동수단 ▶(내용) 산업단지 근로자 등 위한 복합커뮤니티시설(소통공간, 키즈카페 등) 조성 및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 기반 조성
관심지역(2개)	
김천시	<p>< 김천형 이음플랫폼, 김천ZIP(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만족도를 제고,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 ▶(내용)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 거주공간 및 쾌적한 생활편의 지원공간(커뮤니티센터)을 조성하고, 근로자·귀농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포천시	<p><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지역 교육혁신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내용) 돌봄·교육·여가 복합공간인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온·오프라인)을 구축하고, 포천형 돌봄 프로그램, 멘토링·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2. 지역활력기반지원(국토부)

□ 개요

- (목적)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사업당 4년간 국비 최대 20억원 지원*
 - 사업 선정시 설계비 등 1차년도 소요예산 '25년부터 즉시 지원**
 - * 1년차('25년) 4억, 2년차('26년) 6억, 3년차('27년) 6억, 4년차('28년) 4억
 - ** 정부-지자체 5:5 매칭,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역활력타운 조성 희망 기초지자체
- (지원범위) ①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 ②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사업 추진비용(지역개발지원법 제55조)
- (지원절차) 지역활력타운 공모선정 → 계획수립 → 지역개발계획 반영* → 예산지원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실시계획 수립 → 착공
 -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3만㎡)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사업 지원

<지역활력기반지원 사업 예시>

- ① (기반조성1)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단지 내 도로와 산책로, 주차장, 커뮤니티 광장, 에너지 기반시설 등 조성
- ② (기반조성2) 입주민 및 지역민 대상 공원·산책로·광장 조성, 인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진입도로와 시설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 주차장 조성
- ③ (커뮤니티센터1) 소규모 문화공간 용도의 북카페, 지역 주민간 교류 및 문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다목적실 및 교육실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센터 조성
- ④ (커뮤니티센터2)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오피스, 문화갤러리, 돌봄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3.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체부)

□ 개요

- (목적) 국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
 -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 충족으로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 (현황) '97년부터 지역 수요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4년 10월까지 총 737개소를 지원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자체(광역 및 기초) 자본보조
- (지원내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3개 유형
 - ① 생활밀착형 : 수영장·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
 - ② 시니어친화형 : 노령층 참여도가 높은 종목시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③ 유아친화형 : 유아·어린이의 놀이와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사업 주체	지원 유형 및 지원액(정액)	비고
시·도	생활밀착형(일반형/장애인형), 30억/40억(4년간)	1차년도
(시·군·구)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 30억(4년간)	개소당 2억원 지원

- (지원재원) 체육기금
- (지원범위) 국민체육센터 시설 건립비 일부지원 ※부지매입비 제외
- (공모 절차) 지자체 안내 → 신청접수 → 평가·발표

- 세부추진 일정(안) ※ 문체부 단독 공모 시

설명회·공모 안내	4~5월	• 문체부 → 시·도 → 시·군·구
신청·접수	6~7월	• 시·군·구 → 시·도 → 문체부
현장확인·평가	8~9월	• 정량평가(70%), 선정위 정성평가(30%) * 필요시 현장실사 시행
사업 선정 및 통보	9월말	•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통보* • 문체부 → 시·도 → 시·군·구

* 차년도 예산액 확정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결정

- (국비 교부·관리) 전년도 공모·선정 후 실제 국비는 다음연도에 설계비(2억원)를 지원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2년차 이후 국비 지원금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됨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사업지원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일반형)

<p>도시 성장형(인구증가 도시-평균인구 44만명)</p>	<p>소도시 성장형(인구증가 중소도시-평균인구 14.8만명)</p>
<p>도시 성장형 기본모델</p>  <p>(권장면적) 3,760㎡ / (사업비규모) 90억원</p>	<p>소도시 성장형 기본모델</p>  <p>(권장면적) 2,956㎡ / (사업비규모) 70억원</p>
<p>도시 특화형(인구정체 도시-평균인구 31만명)</p>	<p>소도시 특화형(낮은인구 소도시-평균인구 4만명)</p>
<p>도시 특화형 기본모델</p>  <p>(권장면적) 2,956㎡ / (사업비규모) 70억원</p>	<p>소도시 특화형 기본모델</p>  <p>(권장면적) 2,332㎡ / (사업비규모) 55억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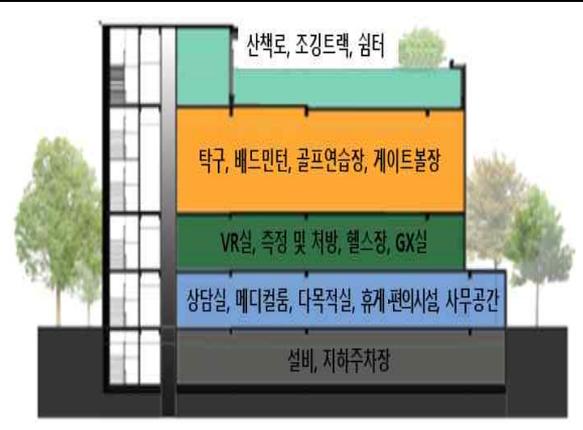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장애인형)*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 특화형
<p>체육관형 도입시설</p> 	<p>수영장 복합형 도입시설</p> 	<p>하계종목(골프, 론볼, 볼링, 사이클, 양궁 등)과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 수상종목(조정, 요트 등) 등 종목특화 시설 건립 또는 골프, 보치아 등 장애 유형에 특화된 종목 중심의 시설 건립</p>

* 장애인체육과에서 별도 선정·지원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 * '23년부터 지원

- 시설 : 탁구, 배드민턴,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 종목시설과 물리·재활 치료가 가능한 메디컬룸 등
- 지원규모 : 4년간 30억 원
※ 1년차 2억 원 지원
- 시설(면적) : 권장규모 2,500㎡



○ 기존 유형과의 차별성

- (시설 측면) 게이트볼, 탁구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시설을 집적하여 조성
- (서비스 측면) 첨단 기술을 활용 노인특화 운동기구 설치, 건강측정에서 운동처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인스포츠지도사·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 배치
- (이용행태 측면) 신체활동과 인지기능 개선, 처방, 여가 등 종합서비스를 받으며 장시간 편안히 체류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구성

□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 '24년부터 지원

- (개요)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놀이와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유아(3세~미취학) 친화형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으로 유아기 발달 촉진 및 생애 초기부터 생활체육 참여 기본권 보장
- (지원모델) 유아 신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체육시설 + 전문프로그램 운영

구 분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유형(안)	
지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인구 밀집 • 기반시설 부족 	<p style="text-align: right;">미니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모래놀이장, 물놀이장 등</p> <p style="text-align: center;">권장 연면적 : 2,000㎡ 내외</p>
기본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체육관 (700㎡) • 헬스장 (300㎡) • GX룸(요가, 댄스 등) (200㎡) 	
권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풀 등 실내(외) 활동공간 (300㎡) • 수면/휴게실 (2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면적 • 카페, 심터 등 기타시설 	

※ 세부시설(기본·권장시설) 규모 및 구성 등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유아친화형 실외 시설(예, 미니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설치 가능

참고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지원(지특회계 자율계정)

① (정책목표)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참여기반 확충 및 지역 공동체의 장 마련

-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내용) 지역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정액 10억원)

※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유형

구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주요 기능	일상생활 속 스포츠 활동 공간
서비스대상	근린생활권(도보 접근 가능 지역) 서비스 반경 : 1km
시설 및 서비스 종목	소규모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탁구, 요가 등
시설(면적) 권장 규모	1,000㎡(지상 1층)

③ (사업기간) '18년 ~ 계속

④ (지원조건)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사전절차)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건축 인허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 (지원규모) 1개소당 10억원을 3년간 분할 지원*

* 1차년도 : 2억원(설계비), 2년차~3년차 :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교부액 배분

⑤ (보조율) 1개소당 국비 10억원 정액 지원

※ 참고사항

- ① 사전절차: 주민의견 수렴,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등
- ② 예산신청 및 집행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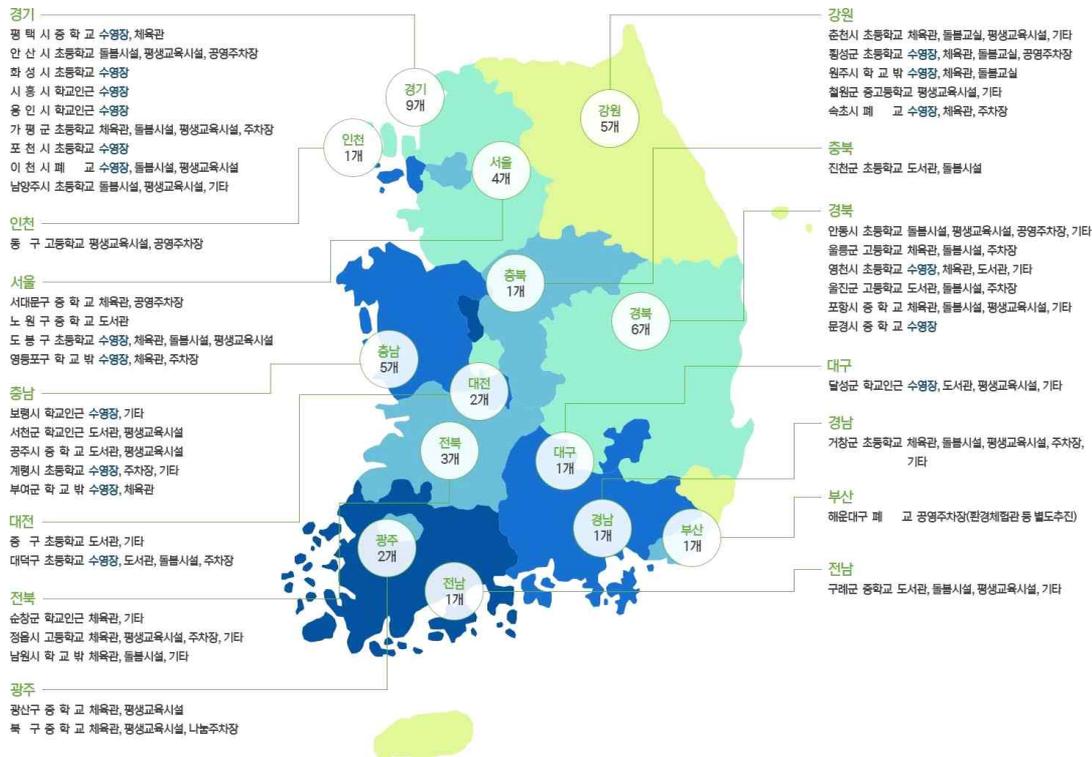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 예산확정	→ ←	문화체육관광부 ○ 가이드라인 제시 ○ 예산신청내용 검토 ○ 성과평가	→ ←	시·도 ○ 예산신청 ○ 사업관리	→ ←	시·군 ○ 예산신청 ○ 사업집행
---	-----	---	-----	--------------------------------	-----	--------------------------------

4. 학교복합시설 건립지원(교육부)

□ 개요

- (목적) 학생·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늘봄학교 지원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 (현황) '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15개 교육청 42개 사업 선정
 - 총사업비 8,370억 원 중 약 3,601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약 43%)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결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5년간('23~'27) 연평균 40교(총 200개교) 공모·선정(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연 3,600억 원, 총 1조 8,000억 원 규모)
 - ※ [40교 × (250~350억원) × 30%] × 5년 = 18,000억 원

☞ 지원금은 학교복합시설(건물) 당 20%~50%로 건립비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 신청을 받아 지역 현안에 맞는 개별 사업을 연평균 40교 선정
- (지원범위) 교육·돌봄, 체육·문화 용도의 학교복합시설 건립 비용 일부
- (지원절차) 공모사업 공고('24.12.) → '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25.1.) → 1차 접수('25.2.) → 1차 선정('25.3.) → 2차 접수('25.6.) → 2차 선정('25.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26.3.)

※ '25년 공모·선정 사업은 26년 예산 지원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자체 공모 우선 선정

□ 지원사례

① 남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전남 남원시, '24년도 선정)

- (개요) 운봉초등학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학생의 돌봄시설 구축 및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내용) 학교복합시설 건립비의 50% 지원
 - (지역여건)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대학30 연계를 통한 미래교육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활력타운 연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 가능한 문화·체육 복합시설 마련
 - (학교시설 연계) 동부권 학생을 위한 미래교육실 등의 교육공간 조성, 교육청·지자체 협업을 통한 늘봄시설 조성

5.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보건복지부)

□ 개요

- (목적) ICT기기로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실시간·비대면의 24시간 돌봄 가능
- (현황) 노인 및 장애인 22만 가구 서비스 제공 중('23.10월 기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1만원 이용료(설치 및 유지관리비 포함)
- (지원대상 및 요건)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범위) ICT장비 설치·정비 및 안부확인 등 대상자 관리
- (지원절차) 대상자 추천 및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 접수 및 대상자 기준 검토 → 대상자 승인 후 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 지원사례

< 댁내 설치 기기 >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우선 배정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 개요

- (목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대상자는 제외)

- (규모) 취약노인 55만명, 수행기관 670개소('24년 기준)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타운 내 독거노인 거주자 수를 반영하여 시·군·구 연간 대상자 수 배정

- (지원대상 및 요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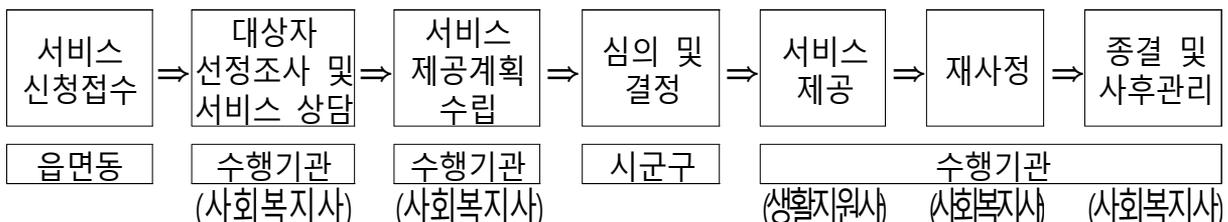
- (서비스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서비스 제공절차)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의 전담인력(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흐름도 >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우선 배정

7. 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

□ 개요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사업내용)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시장형 사업단 등) 지원하여 어르신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사항) 타운 내 65세 이상 거주자 수를 반영하여 연간 시·군·구 일자리 수 배정
- (지원규모) 109.8만 개 / 2조 1,847억원
- (지원대상) 지자체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서울 국비 30%, 지방비 70%)
- (지원절차)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우선 배정

8.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 개요

- (목적)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 및 청·중장년 등의 수요에 대응해 재가돌봄,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현황) 17개 시·도(185개 시·군·구)에서 사업 시행 중('24년 기준)

□ 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지방비 규모 및 지역 수요를 감안해 국비 매칭(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 (지원범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바우처 금액), 운영비(홍보, 행사, 회의, 자문 등) 등
- (지원절차) 차년도 참여지역 조사(전년도 9월) → 지자체별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복지부 승인(1~2월) → 예산 교부 및 교부액 조정(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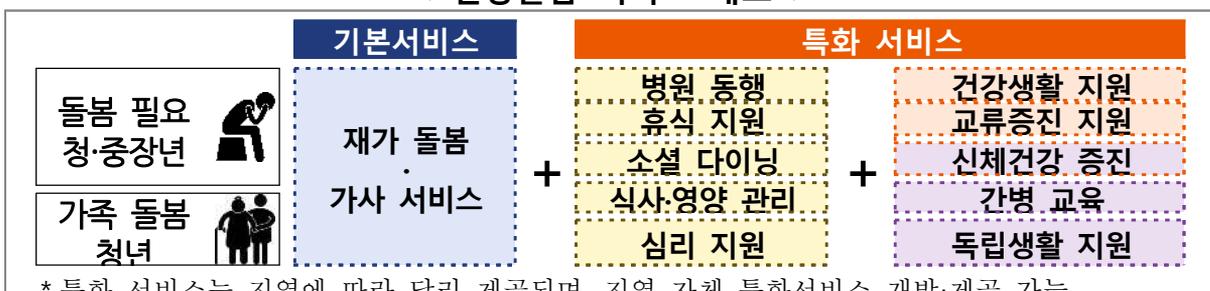
* 통합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서 사업연도 중 별도 신청하는 경우 국비 지원 상황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예산 수시 교부 검토 가능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예산 우선 지원

□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가족돌봄청년(13~39세), 돌봄 필요 청년 및 중장년(19~64세)
- (지원내용)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조합하여(기본+특화 최대 2개) 선택·이용(전자바우처 방식)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9.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보건복지부)

□ 개요

- (목적) 지역 내 사회서비스 취약지(도서, 산간 및 농어촌 지역 등)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 사각지대 해소 및 균형발전에 기여
- (현황) '24년 10개 시·도, 81개 시·군에서 사업수행
 -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원내용('25년)

- (지원금액) '25년 총 44억원(국비 31억원, 국고보조율 70%)
- (지원대상 및 요건) 복지부가 제시하는 가이드 내에서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취약지, 제공서비스* 및 거점 제공기관을 정해 지원
 - * 대상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중 지역이 선택
- (지원범위) 거점 제공기관에 인센티브(서비스가격의 50% 이내), 출장비, 운영비(기관당 1천만원 내외/1년) 지원
 - * 취약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을 취약지 사업 예산으로 지원
- (지원절차) 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24.11월) → 시·도 사업계획 제출('24.12월) → 복지부 검토·확정('25.1월) → 사업시행('25.2월~)
 - * 통합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서 사업연도 중 별도 신청하는 경우 국비지원 상황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검토 가능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우선 지원

□ 지원사례 : 전남 고흥군 취약지 지원사업

- 고흥군에서 취약지인 군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순천시 제공기관을 지정·지원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10. 농촌아이돌봄지원(농식품부)

□ 개요

- (목적)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 폐원 방지
- (현황) '12년부터 사업 시작, '24년 기준 72개소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시설비 개소당 152백만원, 운영비 개소당 13.7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및 요건) 농촌 읍면·도서지역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소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 3인 미만일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승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① 시설비: 리모델링·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기자재·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② 운영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지원절차) 공모(11~12월) → 심사·통보(12~1월초) → 예산지원(1월) → 사업시행(연중)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에 선정된 지역이 농식품부 농촌아이돌봄 지원 사업 공모 신청시 우선 선정

□ 지원사례

① 화성 비봉어린이집

- (개요) 농촌지역 소규모어린이집 운영·시설비 지원으로 운영여건 개선
- (국비지원 내용) 프로그램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건물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
 - (운영비) 아동들에게 전액 무료 보육 실시
 - (시설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고 롤매트, 벽쿠션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부모 만족도 높음)

② 상주 화북어린이집

- (개요) 농촌지역 소규모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여건 개선
- (국비지원 내용) 프로그램개발비, 교구교재비,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등의 운영비
 - (운영비) 운영이 어려워 폐원을 고려하였으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추가로 아동을 받아 지속 운영

③ 정선 북평어린이집

- (개요) 농촌지역 소규모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여건 개선
- (국비지원 내용) 프로그램개발비, 교구교재비,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등의 운영비
 - (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받아 요리·미술·안전 프로그램 등을 동화구연·실생활 적용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와 학습동기 부여

11. 농촌돌봄농장(농식품부)

□ 개요

- (목적)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현황) '19년부터 사업 시작, '24년 기준 97개소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개소당 55백만원(1년차 25백만원)
- (지원대상 및 요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 (지원범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소모임, 세미나 등), 기획비, 홍보비, 시설비 등 지원
- (지원절차) 사업 공모('24.12월) → 사업 신청('24.12~'24.1월) → 심사(서면·현장심사, '25.1~2월) → 사업자 선정('25.2월) → 예산 배정('25.3월)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우선 선정 (통합공모와 별개로 농식품부 농촌돌봄농장 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필요)

* 기존에 선정된 농촌돌봄농장과 프로그램 연계 운영 필요

□ 지원사례

①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북 완주)

- (개요) 발달장애인·독거노인 돌봄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 (국비지원 내용) 마을 소유 공동농장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아동 가족과 마을 독거노인, 주민이 협업하여 농장 관리 프로그램 운영

②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전남 영광)

- (개요) 고령자 돌봄 및 일자리 나눔 프로그램 운영
- (국비지원 내용) 영광특산물 모싯잎송편을 생산하기 위해 모싯잎과 동부콩을 재배하고, 송편으로 가공 및 판매하여 노인 일자리 확보

12. 어촌신활력증진(해수부)

□ 개요

- (목적)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 (현황) '23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98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25년 대상지 26개소 선정 추진 중

* 유형1 10개소, 유형2 40개소, 유형3 48개소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유형1)300억원(국비 50%), (유형2)100억원(국비 70%)
- (지원대상 및 요건) (유형1)국가어항(무역항·연안항 어항구역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유형2)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 항 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 (지원범위) 어촌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창업, 경제 인프라 조성 및 돌봄 교육 의료 등 생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
- (지원절차)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선정* → 기본계획서 수립 및 심의 → 사업비 확정 → 실시계획 수립 및 확정 → 착공

* '25년도 사업대상지는 '25년 2월 말에 선정될 예정으로 지역활력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시점과 상이 ⇨ '25년 지역활력타운 선정 시, '26년 사업공모 우선선정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우선 선정*

* 해수부 별도 심사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우선 선정

□ 지원사례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강원 양양군 수산항)
 - (개요)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사업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 활성화
 - (국비지원 내용) 수산물복합시설 및 창업·창직센터 조성, 관광공간 확장 등
-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충남 서산시 팔봉 생활권)
 - (개요) 귀어인 유치를 활성화하여 유입인구 정착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 (국비지원 내용) 어촌생활거점(행복스테이션) 조성, 임시주택 지원 등

□ **추진 배경**

- 어촌은 열악한 생활·경제 여건으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
 - * 어가인구 : ('00년) 251천명→('20년) 97천명('00년 대비 △61.4%)
- 어촌 규모·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거점과 주변지역의 유기적 연계 등 기능 배분 효율화를 위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23~'30)
 - * 총 300개소 3조원 (유형1) 개소당 300억원 (유형2) 개소당 100억원 (유형3) 개소당 50억원

□ **주요 내용**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유형 1)

- (경제기반 확충) 국가 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복합센터, 해양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생활서비스 공급) 수익시설과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조성, 주변 생활권으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유형 2)

- (어촌형 소득원 확대) 간편식(순살 고등어) 등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
 - * (예시) 고등어(350g) 2,000원 → 가공 순살 고등어 10,000원(부가가치 5배 향상)
- (어촌 생활서비스 개선) 어촌에서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돌봄·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조성 등 전달체계 개선

③ 어촌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유형 3)

- (생활환경 개선) 태풍·해일 등 대비 재해 안전시설 보강, 빈집 정비·공동쓰레기 집하장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
- (교통편의 증진) 선착장·방과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 개선

□ **향후 계획**

- '25년도 신규사업 공모 및 선정 추진('24.9~'25.2)

13. 청년어업인정착지원(해수부)

□ 배경 및 사업 목적

- (배경) 어가인구는 '22년 9.08만명으로 '17년(12.17만명) 대비 25.4% 감소, 어가수도 '22년 4.25만호로 '17년(5.28만호) 대비 19.5% 감소
 - 어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2년 44.2%('17년 대비 9%p 증)로 전국평균(18.0%) 대비 약2.5배 높아 어촌소멸 및 고령화 가시화
- (사업목적) 어촌 내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귀어인 등을 대상으로 어촌정착금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어촌소멸에 대응
 - *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④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 지원내용

- (사업규모) 3,074백만원('25년 국비 기준/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금액) 어촌정착금 1인당 최대 월 110만원(최장 3년간 지원)
 - * (어업경영 기준)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지원대상 및 요건)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범위) 귀어인 및 수산업 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선발(시·군)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수업 이행 및 점검(시·군) → 성과평가(해수부)

해양수산부	↔	지자체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 10월) ③ 사업대상자 확정·예산 재분배(당해 1월) ⑤ 보조금 교부 결정·송금(당해 1월) ⑧ 사업실적 검토 및 보조금 확정(익년 3월)	↔	② 사업대상자 공고·선정(전년 12월) ④ 보조금 교부신청(당해 1월) ⑥ 사업시행(당해 1월) ⑦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익년 2월) ⑨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사업완료(익년 2월)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 시·군·구 우선 선정

□ 지원실적

① 청년 귀어귀촌인 삶의 질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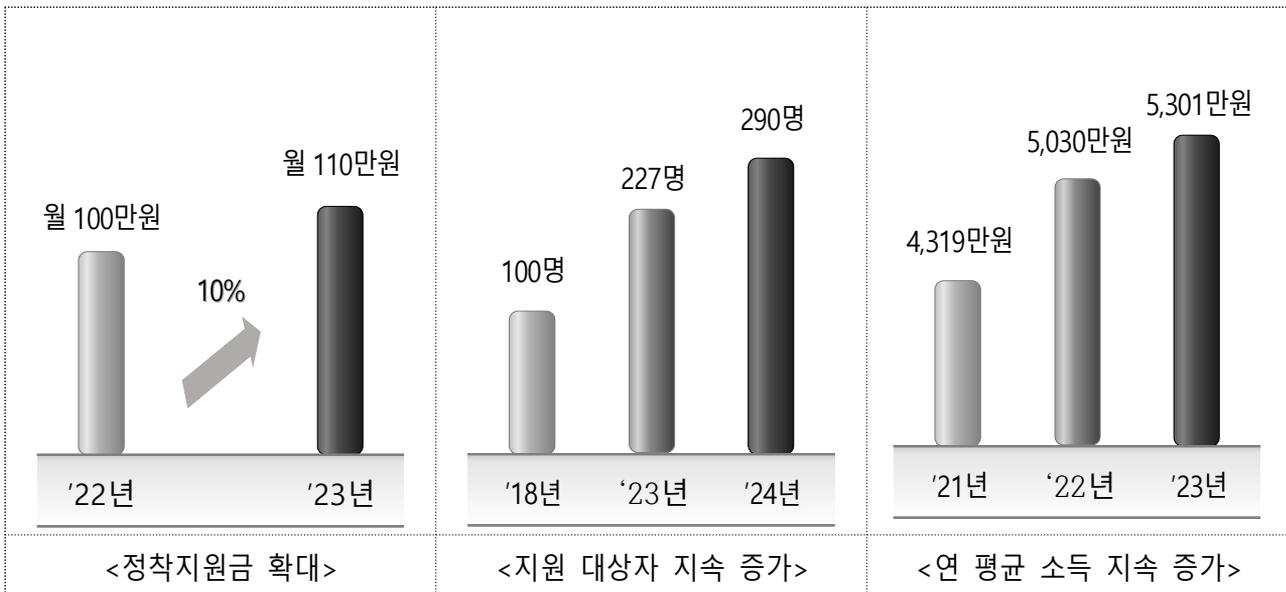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대* 및 지급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 도모

* 청년어업인정착금 지원규모 : ('23) 227명 → ('24) 290명 → ('25) 355명 예정

** (기존)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자 → (확대) + 해양레저관광업자

- 지원대상('18년 100명 → '24년 290명)이 지속 증가*로 현재까지 총 1,425명 지원하여 어촌소멸 및 고령화 적극 대응 중

* 지원대상(명): ('18) 100→('19) 169→('20) 208→('21) 206→('22) 225→('23) 227→('24) 290



- 사업 수혜자의 연 평균 소득*이 매년 꾸준히 지속 증가('21년 4,319 → '23년 5,301만원)로 나타나, 청년 어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정착지원사업 참여자 소득 현황(만원) : ('21) 4,319 → ('22) 5,030 → ('23) 5,301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25년 사업 대상 규모 확대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 확대를 위해 '25년 예산 21.6% 증가*

* 예산 확대 : ('24년) 2,527백만원(290명 지원) → ('25년) 3,074백만원(355명 내외 지원 예정)

14.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중기부)

□ 개요

- (목적) 지역의 제조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현황) '20년부터 제조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약 2,000여개사 기업을 지원('24년 558억원, '25년(안) 614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매출액에 따라 보조율 차등*)
 - * 3억원 이하 85%, 3~10억원 65%, 10~50억원 55%, 120억 이하 45%, 120억 초과 40%
- (지원대상 및 요건) 주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 일반바우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지원범위)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설팅(4개)	경영기술전략, 탄소중립, 중대재해예방, 재기 컨설팅
기술지원 (5개)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지재산 획득 및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AX-DX 추진전략
마케팅(4개)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물 제작, 광고 지원

○ (지원절차)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최소요건 평가후 우선 선정

* '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의 기업모집 공고는 별도 진행('24.11월, '25.3월 예정)

15.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행안부)

□ 개요

- (목적) 지역 고유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되는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

* 국정과제 119-4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생활실험,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등을 통한 창조커뮤니티 확산

- (개념) 생활권*을 단위로, 매력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고유한 강점·특색을 강화하여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전략

*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단위(도보 15분)

- (현황)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매년 10개소 선정·지원(사업비, 컨설팅 등)

※ '24년 : 지역이 현장여건에 맞게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지역특색 발굴 (로컬브랜딩, 1곳당 3억)부터 확대정책(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1곳당 14억)까지 단계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0곳 내외 생활권 단위, 1곳당 3억원(특교세 기준)*

* 선정지를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 협력사업('24~'26년간 년 20억원 규모) 추가 지원 예정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매칭

- (지원대상) 로컬브랜딩을 통해 생활권을 활성화하려는 시·군·구

- (신청요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 사업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행(세종·제주 포함)하되, 광역지자체 지방비 공동매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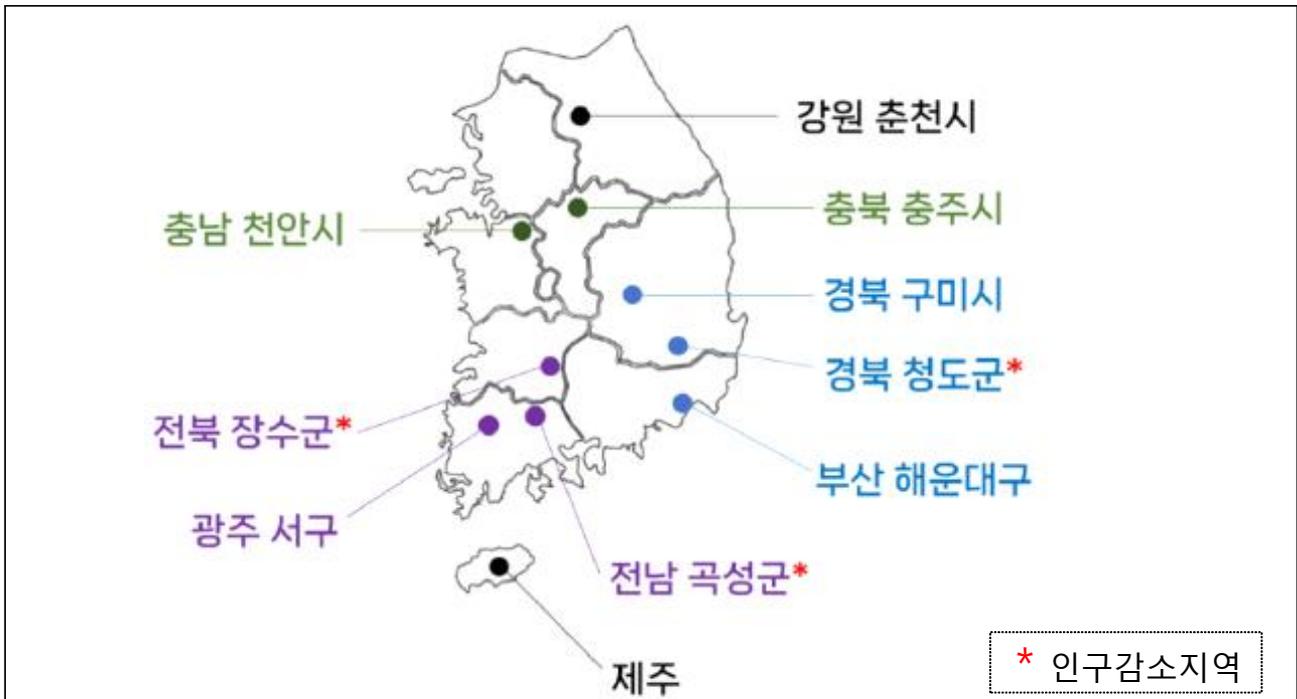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지방비 확보 등)에 대한 지자체 자체심사 후 공문으로 신청

- (선정절차) 사업공모·접수(4월초 예상) → 실무검토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최종선정위원회 선정(5~6월 예상)

※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가점 부여

□ '23년 추진 중인 10개 사업



연번	지자체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	부산 해운대구	지역 확산 플랫폼 「해운대 플랫폼 1934」	○ 폐쇄된 해운대역에 가로막혀 침체된 해리단길을 역사 개방을 통해 해운대(구남로)와 적극 연결하여 활성화
2	광주 서구	건강한 마을 「피지컬 발산마을」	○ 발산마을의 골목길과 언덕을 활용, 운동과 건강 주제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활력 제고
3	강원 춘천시	지역특화브랜드 기반 「약사마을」	○ 약사천 인근 원도심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 도심 속 로컬브랜드를 개발하고 춘천 고유의 로컬콘텐츠 발굴
4	충북 충주시	충주 살면 충주사람 「관아골」	○ 지역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신규 창업자 육성 및 교육 등 강화로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 추진
5	충남 천안시	로컬크루가 만들어 가는 「옛 법원길 프로젝트」	○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침체된 옛 법원길에 청년·로컬크리에이터 등의 창업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
6	전북 장수군 인구감소	한국의 샤모니 「장수 트레일 빌리지」	○ 장수읍의 산악 지형을 기반으로 청년 등이 참여하는 트레일러닝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창업 및 관광 촉진
7	전남 곡성군 인구감소	뚝방마켓 날개를 달다	○ 섬진강 기차마을 인근의 '뚝방마켓'을 특색 있는 장터로 정비하여 지역자원 활용 창업을 활성화, 관광 명소 조성
8	경북 구미시	슬로우 북 라이프, 「각산마을」	○ 구미의 '핫플'인 금리단길(각산마을)을 '책 읽는 마을'로 조성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예술 거리 구축
9	경북 청도군 인구감소	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 100여 년간 중심지였던 '고수구길'의 다양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청도 특화 역사콘텐츠로 개발
10	제주도	해녀문화타운 「김녕, 해녀마을」	○ 해녀 생활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등으로 개발하여 '해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

16.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행안부)

□ 개요

- (목적)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및 지역에 활력 제고
 - ※ 국정과제(119-4) 참여·협력·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 (현황) 전국 39개 청년마을 조성·운영
 - ※ ('18~'20년) 매년 1개씩 총 3개 시범 조성 / ('21~'23년) 매년 12개씩 총 36개 조성

□ 지원내용

- (사업규모) 신규 청년마을 12개(전액 국비, 총 30억) ※ 컨설팅 등 포함
- (지원금액) 지역별 6억(기초 시군구별 1개소×2억씩 3년간)
 - ※ 매년 지자체, 청년마을 운영주체 사업 평가를 통해 차등 및 계속 지원 결정
-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기업(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 근거)
 - ※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의 대표가 청년('25.1.1)이고, 운영인력 중 청년 비율 50% 구성
- (지원범위) 신규 청년마을 조성 및 운영 경비*, 컨설팅 등 활성화 지원
 - * 유희공간 리모델링(DIY, 전문공사, 물품 구입 등),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 (사업내용) 유희공간 활용 활동공간 조성 및 유입 프로그램 운영

구분	청년마을별 주요 추진내용
지역살이	청년마을 숙소 또는 지역 숙박시설 활용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검증, 사업화 실증, 인턴십 등
공간조성	임시 주거(단기, 장기),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등을 위한 활동공간 구축 및 운영
교류·소통	참여 청년-지역주민, 지역 내외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 추진

- (지원절차) 신규 청년마을 공모 및 선정(1~2월)* → 실행계획서 수립 및 승인(3월) → 사업비 확정(3월) → 사업 운영(4~11월) 및 평가(12월)
 - * (신청·접수) 청년기업→ 기초 시군구(공문)→ 광역 시도(공문)→ 행정안전부
 - ※ 既조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신규 청년마을의 활동공간으로 제공 약속서 제출 시 가점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가점 부여

17. 우리동네살리기(국토부)

- (사업목표)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 * (규모) 5만㎡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50억

- (대상지역)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 편의시설 부족, 주택 등 노후화, 상권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특징)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 **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 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 (사업내용)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기초생활 인프라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 공급
주거지 정비·지원	건축물 및 도로가 노후화되고 빈집, 불량주택 등 도시경관 저해 지역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지원 * 지역자원을 연계한 골목 활성화 등 권장
공공임대 주택공급	저소득계층, 노인 등 주거취약자 거주지역	유휴부지 매입, 공기업 사업 연계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방식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가점 부여

*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 선정시 '26년부터 예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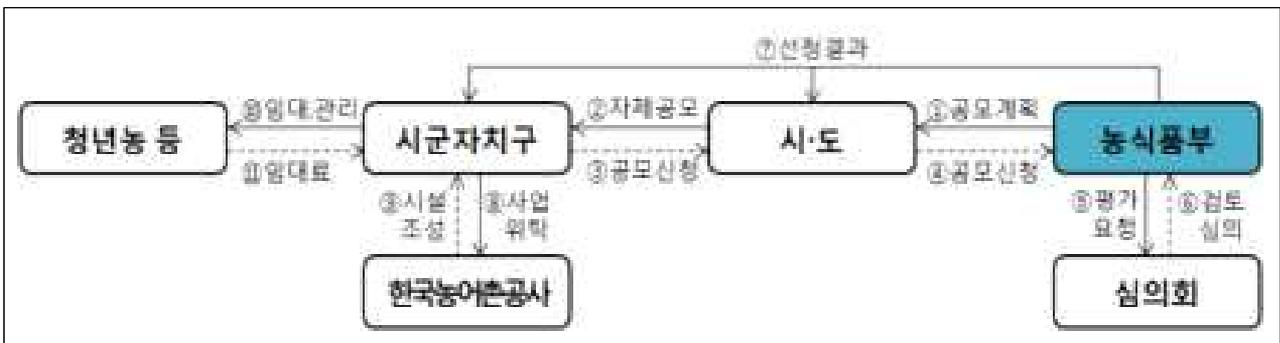
18.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 개요

- (목적)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소유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의 농업·농촌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
- (현황) '20년부터 13개소 선정·조성 지원(~'24)
 - * ('20) 평창·제천, ('22) 양구·장수·신안·영천, ('23) 삼척·김제·밀양, ('24) 영동·서산·영암·예천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총사업비 200억원/개소(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대상 및 요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희망 지자체
- (지원범위) 부지 기반조성, 온실, 에너지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당 사업비 및 사업규모(부지 5ha 이상, 온실 4ha 이상)를 준수
- (지원절차) 농식품부 → 지자체 → 한국농어촌공사(위탁 조성)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가점 부여

19. 신사업창업사관학교(중기부)

□ 개요

- (목적) 창의·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자금 등 단계별 창업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 촉진
- (설치현황) 서울, 부산 등 전국 17개 지역에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24년 기준)
-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경남, 전북, 울산, 전남, 충북, 강원, 경북, 제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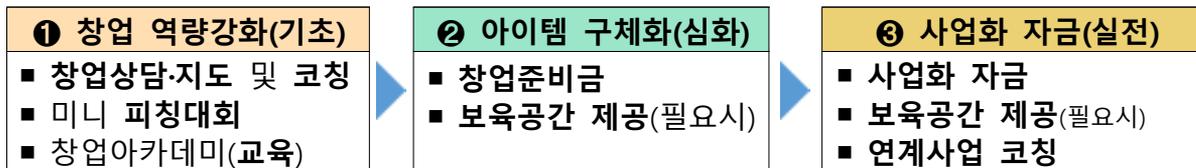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 현황>

오프라인 체험점포		온라인 체험점포(드림스퀘어)	
			
서울 명동점	부산 범일점	실시간 교육장	영상 스튜디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예비창업자
- (지원금액) 최대 4천만원
- (내용) 유망한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상담·지도, 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사업 지원체계>



- (주요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3월) → 심사(4월) → 확정(~4월) → 사업화지원(5월~)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지원자 가점 부여

20.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중기부)

□ 개요

- (목적)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가치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내용)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화 지원(최대 4천만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 (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내용)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 4천만원)

* 선정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3월) → 심사(4월) → 확정 및 협약(~4월) → 사업화지원(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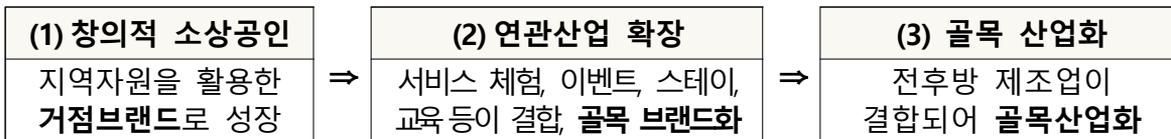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지원자 가점 부여

21. 로컬브랜드 창출(중기부)

□ 개요

- (목적)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간의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창의적 소상공인이 모여 연관산업으로 확장되고, 제조업이 결합하여 골목산업으로 발전되는 등 골목상권이 골목산업으로 발전

< 로컬상권이 골목산업화되는 과정 >



- (내용) 상권 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로컬크리에이터가 대표기업이 되어 3개사 이상(대표기업 포함)이 한 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팀 구성) 협업팀은 팀 대표기업과 팀원 기업으로 구분하며 사업 신청 및 평가 참여, 협약은 팀 대표기업을 기준으로 진행
 - (지리적 요건) 팀을 구성하는 모든 협업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함
- (지원내용)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상권 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5억원 지원
- (지원절차) 모집 및 신청(~3월) → 심사(4월) → 확정 및 협약(~4월) → 사업화지원(5월~)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지원팀 가점 부여

22.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중기부)

□ 개요

- (목적)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함으로써 앵커스토어·기업로의 성장을 지원
- (지원유형)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향점에 따라 ①라이프스타일, ②로컬브랜드 및 ③글로벌·온라인 셀러로 세분화

< 강한 소상공인 육성 유형 >

【1】 소상공인 + 창작자 ■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2】 소상공인 + 스타트업 ■ 기획·판로 등에 스타트업의 속도·편의·효율성 부여	【3】 소상공인 + 소공인 ■ 이업종 간의 결합과 협업을 유도하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
--	---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소상공인
- (지원금액) 최대 1억원
- (내용) 단계별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① (선발·팀빌딩) 유망 소상공인 발굴 후 창작자·스타트업과 팀 구성
⇒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 팀 엄선
- ② (BM고도화) 선발팀을 대상으로 공간기획·시제품 제작 및 실증,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자금 지원
- ③ (스케일업)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최우수 팀을 선발하여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자금을 추가 지원

【1】 선발 및 팀빌딩 ■ 팀 선발 및 팀 빌딩	⇨	【2】 BM고도화(최대 6천만원) ■ 멘토링, BM 고도화 자금 지원	⇨	【3】 스케일업(최대4천만원) ■ 최우수팀 선발 및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	---	--	---	---

- (지원일정) 모집(~3월) → 심사(4월) → 팀 선발(~4월) → 1차 오디션 (6월) → 2차 오디션(9월)

※ (통합공모 연계) 통합공모 선정 시, 해당지역 지원자 가점 부여

참고 4

지역활력타운 계획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할

① 계획수립

- ▶ 공모사업 계획 시 지역활력타운 반영, 주택 공급 계획 수립
- ▶ (주거) 입주 수요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계획과 연계하여 **주택 유형, 후보지, 물량 검토**
 - ※ 구체적인 사업유형, 후보지, 물량, 사업성 분석은 필요시 LH와 사전협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토부와 LH가 지속 컨설팅 예정
- ▶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설유형, 규모, 입지 등 계획**, 기존 시설의 연계·활용방안 검토
- ▶ (생활서비스) 일자리·취업지원, 여가·돌봄 등



② 자원조달

- ▶ 부지매입, 건설비, 운영비 등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분담 필요**
 - * 분담 규모는 주택 유형, 규모 등에 따라 변동
(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의 경우 지자체 부담 원칙,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 분담금을 개별 산정할 예정으로 부지 및 건설비용의 약 20% 이상 분담 필요)
- ▶ **생활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조달**, 필요시 타부처 지원사업 연계



③ 사업추진

- ▶ 부지확보, **사업 인·허가**, 지구 밖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 협조 등



④ 시설운영

- ▶ **주택**은 사업시행자(민간, LH, 지방공사 등)와 협의하여 결정
 - * 단, 공공임대주택 조성시 지자체가 직접 유지관리 또는 LH가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는 비용 일부 보조(30% 이상 분담 필요)
- ▶ **생활인프라**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혹은 위탁 관리
- ▶ **미분양 조성토지 및 민간주택(분양·임대)**은 건설원가 등을 기준으로 준공 3년 이내에 **지자체가 매입 권고**

□ 사업추진 체계 참고

- 사업의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①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②주택건설 및 생활인프라 조성, ③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부지조성) 지자체, 공공기관(LH, 지방공사)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후 조성 토지를 민간(건설사, 리츠·SPC 등) 등에게 매각

* 민간(분양·임대 주택건설용지), 지자체(생활인프라용지), 실수요자(단독주택용지)

- (주택건설 등) 민간(건설사, 리츠, SPC)·지방공사 등이 민간주택(분양·임대) 건설 및 공급, 지자체는 생활인프라 조성 등 추진
- (사후관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종료 시까지 주택관리업체 등에게 위탁관리, 생활인프라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관리

< 참여 주체별 역할(예시) >

부지 조성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후보지를 선정하여 지역활력타운 추진계획을 수립·제안 ▶ 지구 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등 ▶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각종 부담금 부담 또는 면제 ▶ 지역활력타운(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 (필요시)
	공공기관 (LH, 지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력타운(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 ▶ 지구지정 제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인허가 추진 ▶ 부지 조성 관련 설계, 공사 및 조성토지 매각 등
주택 건설 등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프라 관련 설계, 인허가, 공사 등 ▶ 지역활력타운 내 미분양 조성토지 및 민간주택(분양·임대)의 매입확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원가 등을 기준으로 준공 3년 이내에 매입 ▶ 리츠·SPC 설립 시 자본(20% 내외) 출자(필요시)
	민간 (건설사, 리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운하우스 등 주택의 설계, 인허가, 건설, 분양 및 임대
사후 관리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프라 직접 운영 또는 위탁 관리
	주택관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 운영관리(민간의 위탁 관리 등)

□ 작성순서

- ① 표지, ② 사업신청서, ③ 사업계획 요약서(2쪽 이내), ④ 세부 사업계획(25쪽 이내), ⑤ 별첨 및 부록 순으로 작성

□ 작성요령

- 가급적 제시한 목차 구성과 본문 작성분량(별첨·부록 제외 30쪽 이내)을 준수, 쪽 수(page) 기재

- 초과 분량은 별첨으로 별도 제시(본문에 별첨자료 제목과 해당 페이지 표시)

* 예시: ☞ ○○ 협의결과 증빙자료 (000p)

- 공모 평가 가점 항목 관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사업 연계) 중앙부처 주요 사업 선정/지정 증빙(공문 등), 지역활력타운 연계 증빙 (주거 및 입지) 지역활력타운 반경 1km 내 주민 수, 신규 주택 수 증빙

- 응모시 미비된 자료는 서면·현장·종합평가 단계에서 추가 또는 보완 가능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50을 기본으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여백 왼쪽·오른쪽 각 20mm,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mm로 설정)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역개발통합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신청

-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최대한 자제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과 효과, 사실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표 지>

○○시/○○군 지역활력타운 신청서
- 사업명 -

2025. 0

○○시/군

< 양식 1: 사업신청서 >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신청기관	○○(시/군)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직위) :					
	전화 :					
	HP :					
	E-mail :					
신청 내용						
사업명	○○ 사업					
사업위치	예 : ○○시/군 ○○동/읍/면 ○○리 ○○번지 일원 ※ 사업대상지 중앙이나 사업대상지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번 기재					
지역개발 사업구역 면적	※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는 전체 사업면적을 기재, 불필요한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주의					
계 획 사 업 비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계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기타					
	※ 백만단위로 기재					
주요내용	※ 세부사업 요약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시장·군수 ○ ○ ○ (직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 하						

< 양식 2: 사업계획 요약서 >

사업명							사업유형				
위치	○○군 ○○면 ○○리 ○○번지 일원						규모	면적, 연장 및 폭원			
시행자/ 시행방식	○○군 / ○○군 시행						시행 기간	202○~202○			
사업비 (백만원)	구분	재원별					연차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1차년	2차년	3차년		
	계					2026	2027	2028			
	○○군										
	시행자1										
	시행자2										
	기업**										
연계 지원사업	※ 지역활력타운 연계 사업 중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사업명 적시										
사업 주요내용											
주거, 생활 인프라, 서비스 연계의 적절성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 사업기간은 3년 이내(5년까지 연장 가능), 시행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 작성 시 고려

** 일자리 제공 관련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포함

1. 사업개요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성을 제시

2. 목적

※ 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제시
: 인구유치,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3. 위치도

[사업대상지 위치 및 구역계]

<p><사업대상지 위치></p>	<p><사업대상지 구역계></p>
-------------------------	--------------------------

※ 사업대상지 위치 : 해당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대상지 위치를 위성영상지도, 지형도(1/50,000~1/25,000) 등에 표시(변경가능)

※ 사업대상지 구역계 : 위성사진에 사업대상지 구역계 표시

4. 사업 추진 방법

1) 주요 연계사업 : 대상지에 적용하는 연계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계방법

- ① 지역활력타운 메뉴판 연계지원사업 목록, 주요내용, 연계방법
- ② 지역활력타운 연계 지자체 자체사업 목록, 주요내용, 연계방법

2) 사업추진 일정

- ① 공모 선정 이후 계획수립, 지구 지정, 착공·준공 일정, 인허가 계획
- ② 지역활력타운 연계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

3) 분야별 사업시행 주체(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 주택,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부문 참여 주체(사업시행자, 기업, 협회 등)를 모두 기입
* 예시)

사업시행자	대표자	소재지	비고
000군	000	0000	주관
사업시행자	000	0000	참여
기업 (일자리 제공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포함)	000	0000	참여

4) 분야별 사업비(총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시 산출단가에 대한 근거 자료명시

- * 예시1) 도로확장 : $100m \times 4,338\text{천원}/m = 434\text{백만원}$ ('22년도 LH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적용)
- * 예시2) 공원조성 : $3,000\text{m}^2 \times 93\text{천원}/\text{m}^2 = 279\text{백만원}$ ('22년 기반시설별 단위면적당 표준조성비 중 공원단가(국토부고시 제2022-302호))

사업부문	세부항목	사업비(국비포함)	산출내역
주거	주택		
생활인프라	도로		
	공원		
생활서비스	취업지원		
기타	-		

5) 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규제 현황도, 용도지역현황도, 교통지원과 함께 사업내용(기본구상 및 주요 도입기능·유치업종 등)을 **2쪽 이내로 요약한 계획(안)**

II. 사업 내용 타당성

1. 사업 내용의 구성 및 연계성

1)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부문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다음 3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

① 주거분야

* 예시 : 수도권에서 이주하고자 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필지 및 타운하우스와 함께 귀촌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② 생활인프라

* 예시 :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함께 돌봄 시설 및 문화 시설을 커뮤니티 센터에 복합적으로 설치

③ 생활서비스

* 예시 : 학부모(주로 여성) 대상으로 인근 ○○ 기업과 연계 일자리 알선,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강좌 개설 등

2) 분야별 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재원조달 계획 포함)

① 주체별 주요 업무

사업시행자	주요업무	분담률(%)	비고
000군	-	00	주관
사업시행자	-	00	참여
기업 (일자리 제공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포함)	-	00	참여

② 총 투자비 : 사업비 내역(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시행주체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주거	000	000	000	00공사, 민간	
생활인프라	000	000	000	00군	
생활서비스	000	000	000	00공사	
기타	000	000	000	00군	

- 주체별 재원조달계획 : 주체별 자금투입계획, 단계별 투자계획

- 부문별·연도별 투자계획 :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부문별·연도별 사업비

2. 사업추진의 필요성

1)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의 발전가능성

2)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 간 연계추진 시너지 효과

※ 사업내용의 단순한 열거가 아닌, 부문 간 연계로 인한 기대효과 등 연계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포괄적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3. 입지 적정성

1) 해당 생활권 내 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현황 및 연계방안

- ① 지역활력타운 사업구역 인근지역의 생활인프라(면적, 기능, 추진현황 등) 목록 및 생활서비스 접근 정도 제시(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황 및 기존 생활인프라와의 연계 도면 첨부)
- ② 사업구역 및 인근지역 포함 생활권 내 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연계방안

2)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자원 활용 여부

- ① 복합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 반영여부
: 지역성을 반영한 일자리와 주거에 기초한 필요한 생활인프라 제시 여부
- ②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여부

III. 사업 추진 가능성

1. 사업추진계획의 현실성

1) 부지확보 여부 및 계획수립

- ① 해당사업 대상지 부지의 권원 확보 여부(매각·사용 의향서 및 확약서 첨부)

2) 토지이용규제 저촉 여부 및 각종 영향평가 절차 이행 여부

- ① 사업대상지에 토지이용규제 지역 포함여부, 허가권자 현황, 사업추진 관련 사전협의 내용 등 분석 자료(반드시 포함)

※ 토지이용규제지역(「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문화유산법」, 「군사기지법」 등), 환경규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습지보호지역, 환경등급 1등급지 내지 2등급지, 중요 식생군락지, 희귀동물 서식지, 녹지자연도 8등급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토지적성평가 A등급지, 경사도 30° 이상 등)

< 사업부지 토지 현황 >

지번	면적 (㎡)	편입 면적 (㎡)	지목	토지 이용 규제 내역 (용도구역 등)	비고

※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은 별첨으로 제출

- ② 각종 영향평가 등 진행상황이 있다면 제시

3) 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 ① 지자체 토지용도변경 및 이용허가 등 지원 계획
- ②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교통서비스 지원계획
- ③ 미분양 조성토지·주택 매입 계획

2. 이용자 수요 확보 가능성

1) 주택의 구체적 수요 제시(도시 인구의 이동 가능성 등)

- ① 지역 내부·지역 외부에서 요구되는 주택수요를 정량적으로 제시 : 외부 유입인구를 포함한 수요 추정결과 및 근거자료 제시
- ② 수요에 대한 입주의향서·확약서 등 근거자료 제시

2) 생활 인프라 필요성 및 활용 방안 제시(실질적인 수요 기초)

- ① 주택수요, 입주자의 특성 및 제공되는 생활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 제시
- ②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제시

3) 생활서비스 제공 및 연계 방안 제시(지역특화 내용 포함)

- ① 지역특화자원(농업·임업·어업 관련 특산물, 주요 제조업·서비스 관련 기업, 대표 관광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제공 가능한 일자리 제시
- ② 향후 유치예정인 사업(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 ③ 입주자들이 원하는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교육 등 생활서비스 제공 계획

3. 주민용화 및 갈등관리

1) 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여부

- ① 계획 관련 주민, 주민단체 등의 참여 실적
- ② 계획 관련 전문가 참여 실적
 - ※ 사업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 실적(역할,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 ※ 개최계획안에는 일시·장소·대상·내용 등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2) 선주민·이주민 간 예상 갈등 해소방안

- ①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협력사례 및 거버넌스 구축 현황
 - ※ 농촌으로의 이주 인구와 기존 주민간의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 구성원 간 분쟁(의견대립) 조정방안 제시

4. 자체사업 연계

1) 광역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 제시

- ① 지역활력타운에 지원 계획이 있거나 해당 지역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내용, 지원액, 지원기관 등)
- ② 지역활력타운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연계성 및 기여

2) 기초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 제시

- ① 지역활력타운에 지원 계획이 있거나 해당 지역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내용, 지원액, 지원기관 등)
- ② 지역활력타운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연계성 및 기여

IV. 사업 지속성 및 기대효과

1.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1) 주민 생활여건 개선가능성

※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및 주민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2) 인구유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① 인구유입 효과

②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효과

③ 본 사업으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 고용창출효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하며, 이외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 제시

※ 파급효과 추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최근자료 등을 활용

2. 사업유지·관리계획의 적절성

1) 사업유지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① 분야별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주체 확보 여부

- 조직도·역할·내용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공문 등) 제출

- 분야별 운영·관리 주체, 비용 산정 및 자원조달계획, 구성원 간 비용 분담내용

구 분	운영·관리계획 수립여부	운영주체	운영비용 분담주체	비 고
주거	000	0000	0000	
생활인프라	000	0000	0000	
생활서비스	000	0000	0000	
연계	000	0000	0000	
기타	000	0000	0000	

② 사업 관련 홍보계획 수립 여부

부 록

※ 별첨 외에 제안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증빙자료, 통계자료, 방침 문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각종 자료는 부록에 첨부

※ 부록에 첨부하는 자료는 본문에 참고번호를 부여하고, 부록에는 참고번호 부여 순으로 “참고 1, 2, 3등으로 작성 및 페이지 매긴 후 첨부

예)

<참고 1> : 지방자치단체 관련사업 추진방침 등 서류 사본

<참고 2> : 기타 증빙서류 등 일체